

#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소고

## — 독일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김 영 미\*\*

---

국문초록

---

산재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미 5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루어낸 적용 대상의 양적 성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장 논의로까지 발전하였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질적 확장에 대한 논의와 그 전제로서 피보험자 개념과 피보험자로서의 보호 필요성, 다시 말해 피보험자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의 원류인 독일의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성격의 변화와 피보험자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해 일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변화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와 피보험자 중심의 체제를 개관한다. 또한 적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진정 재해보험과 부진정 재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끝으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부연하고,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성 인정과 향후 보편적 재해보험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서 제도의 본질적 성격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산재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성, 사회보험, 플랫폼노동

---

\* 근로복지연구원에서 간행하는 『근로복지포럼』 2019년 12월호에 게재된 “독일 재해보험법상 피보험자 개념과 범위”를 수정·보완하여 발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목 차

- I. 서론
- II.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 III.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및 피보험자
- IV. 독일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중심 체제 강화
- V. 결론

## I. 서론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다.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이 제정되면서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자 하였다. 2020년 현재 시행 56주년을 맞이하는 산재보험은 이러한 보상 외에도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 촉진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에 따라 법 적용의 대상도 제도 도입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제4조)”에서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제6조)”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대상의 변화는 양적 적용 범위의 확장에 불과하며 질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질적 확장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의 목적 및 적용대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된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험제도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반드시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혁적 측면에서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일본이 1940년대에 독일의 법정재해보험법을 모델로 제정한 노동자재해보험법을 벤치마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

상원칙을 단순히 책임보험화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의 경제와 산업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글로벌 경제는 이제 플랫폼 경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적용범위의 양적 확대에 머물러 있다. 즉, 독일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와 달리 ‘사업’ 중심의 산재보험 수혜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과 탈퇴를 위한 신고서에서부터 나타난다. 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각의 기관에 신고하던 사회보험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공동사업장관리번호로 통일되었고, 서식은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서식만 하나가 되었을 뿐 제도는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서식에 4개의 서로 다른 명칭이 기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상실) 신고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고용보험은 피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산재보험은 근로자 고용신고(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 및 피보험자란 표현을 고용보험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별 사회보험이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의 피보험자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적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고,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성격의 변화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의 원류가 되는 독일의 재해보험법제가 규정하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의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 1. 일반적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

산재보험에서 피보험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유형에 따라 피보험자 개념을 살펴보면,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자연인)으로 보험의 객체로서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또한 피보험자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보험수익자’가 있다. 이는 통상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계약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보험의 유형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인보험’과 다른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종류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상법의 경우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별되는데,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된다. 특히,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대표적인 손해보험으로 자동차책임보험이 있으며,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산재보험과는 구상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는 보험계약상의 기명의 피보험자 외에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 대해 일반적 보험관계에서 피보험자로서의 성격, 즉 피보험자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피보험자(Mitversicherte Personen)로서의 지위, 즉 공동피보험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이나 물적보험에서 사용된다. 공동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외에 보험에 의한 보호(Versicherungsschutz)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보험자의 계약상대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독일 민법 제328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익자(Begünstigte Personen)를 의미한다.<sup>1)</sup> 예를 들어, 교육보험의 경우에는 자녀가 공동피보험자가 되지만, 위험·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신청자(Antragsteller)가 1차 피보험자이며, 2차 피보험자가 공동피보험자가 된다(보험계약법 제150조 제2항). 개인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이거나 동거하는 미혼의 자녀로서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때 공동피보험자로 인정된다. 이러한 공동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계자녀, 입양자녀 및 후견자녀들도 포함된다.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에 의한 보호는 신청자에 대한 보호에 준한다. 다만,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 혹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배상청구는 제외한다. 또한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자 및 등록자, 운전자도 공동피보험자가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보호가 제공된다.<sup>2)</sup>

이처럼 일반적인 보험에 있어서 공동피보험자는 상이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보험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보호되는 경우(Co-Insured)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보험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보호되는 경우(Joint-Insured)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공동피보험자 중 한 명의 행위가 다른 공동피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후자는 영향을 미친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나 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동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즉 피보험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공동피보험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의 예외가 적용된다.<sup>4)</sup>

1) Gabler Versicherungslexikon 참조.

2) top Versicherungslexikon 참조.

3) 인터넷 자료 (<https://m.blog.naver.com/ihl5505/220540657416>) 참조.

4)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ume 4, 1 edition, 2016, pp. 208-209; 이강욱·한상용,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The Risk』, No. 1

## 2.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

독일 사회보험에 있어서 일반적인 피보험자 개념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의 인적범위에 대한 규정은 사회보험의 총칙에 관한 사회법전 제4권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혹은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sup>5)</sup> 다만, 동조 제1a항에 따라 기본법(GG)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일인으로 제한된다.<sup>6)</sup>

먼저, 법정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법전 제6권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의해 가입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취업자(제1조), 자영업자(제2조) 및 기타 피보험자(제3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보장의 확대라는 공익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sup>6)</sup>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피보험자 중심의 법정연금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정질병보험 역시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노동자 보험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자 보험을 거쳐 오늘날 거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사회법전 제5권 제5조 이하에서 보험의무를 부담하는 피보험자 그룹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의무 보다는 보험권리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가치가 있는 보험가입 의무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로서 공법적 권리 및 보험관계에 놓이게 된다.<sup>7)</sup>

---

Vol. 5, 2018, 27쪽.

5) 독일 기본법(GG) 제116조는 국적조항으로서 제1항에서 독일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인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을 가진 자 또는 1937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있는 독일혈통을 가진 난민,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6) BVerfGE 29, 221(242 f.).

7) von Maydell/Ruland/Becker (Hrsg.), Sozialrechtshandbuch (SRH), 4. Auflg, 2008, S. 707.

그런데 독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와 수급권자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보험자(Versicherte)라는 표현 보다 권리자, 즉 수급권자(Berechtigt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보험에 비해 근로자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보험의무가 보험료 납부의무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사회법전 제3권 제13조에서 제19조는 피보험자인 권리자의 유형을 재택근로자, 연수생, 진학준비자 및 구직자, (장기)실업자, 실직이 임박한 사람, 장애인, 직장복귀자로 구분하며, 제24조 이하에서는 취업관계에 기초한 보험의무자(취업자)와 기타 보험의무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8)</sup> 그 밖에 재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 III. 독일 재해보험의 성격 및 피보험자

#### 1. 권리 주체로서의 피보험자

독일 재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Versicherte Personen)는 법정 재해보험법인 사회법전 제7권 제1조<sup>9)</sup>에 따라 보호대상인 동시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정 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의 목적조항에서 직접적으로 피보험자를 명시하게 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이르러 직업병과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독일도 1884년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특히

<sup>8)</sup> von Maydell/Ruland/Becker (Hrsg.), S. 949.

<sup>9)</sup>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노동재해와 직업병 및 직무에 기인한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후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 현금급여를 통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한다.”

위험한 분야의 종속노동<sup>10)</sup>과 관련해서 발생한 노동재해로 실질적인 생존위험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목적조항의 변화는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재해보험(Betriebsversicherung)이 개인 중심의 보험(Personenversicherung)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개인 중심의 보험, 즉 개인보험은 보험가입자(Versicherungsnehmer)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내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보험을 포괄하지만, 공적 사회보험 보다 사적보험을 먼저 연상시킨다. 물론, 개인보험도 사회보험과 같이 강제보험으로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질병보험, 재해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개인보험에 해당한다. 즉, 질병보험이나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보험(Pflegekostenversicherung)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즉 재정위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해보험과 수당을 지급하는 요양보험(Pflegetagegeldversicherung)과 같이 포괄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미리 합의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비록 개인보험이지만 피보험자를 직접 보호하기 보다는 그 유족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 독일 재해보험은 직업병이나 출퇴근 재해 이외에도 학생들과 일정한 자원봉사자 및 명예직 종사자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범위는 종속노동의 범주를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산업분야 혹은 특정 위험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중심의 산재보험이 아닌 피보험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sup>10)</sup>

## 2. 피보험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sup>10)</sup> Becker/Franke/Molkentin (Hrsg.), Sozialgesetzbuch VII, 5. Auflage, 2018, S. 35.

### (1) 사회보장적 성격

독일에서 재해보험법을 최초로 제정할 당시(1884년)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보험적 성격의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책임’에서 ‘보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성격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용자의 책임보상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산재에 대한 손실보전적 기능 외에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존엄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세계 인권선언, ILO 헌장 및 국제연합헌장 등 전후 국제헌장을 통해 선언된 ‘인간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의 재해보험 역시 전후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산업 중심의 종속적 근로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핵심으로 수용하였고, 산재보험에서 재해보험으로, 책임보험성 보다 사회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재해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강화는 재해(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확대,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all or nothing principle)’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책임에서 보장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 혹은 변화하는 경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고, 실제 사회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보험기술적 원리에 기초하여 보험의 원리와 사회부조 원리의 조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재해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원인주의(Kausalitätsprinzip)적 관점에서 보험사고의 원인과 업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결과주의(Finalitätsprinzip)<sup>11)</sup>

적 관점을 반영하여 보험사고와 사고의 결과만으로도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선지급 후정산). 그럼에도, 독일 재해보험에서 사용자 면책 및 손실보전적 기능은 배제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면제는 역사적으로도 본질적인 태생적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원리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 (2) 피보험자 중심의 관리체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관리체계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즉, 사회법전 제4권 제2조 제1항에서 “사회보험은 법률 또는 정관(보험의무) 혹은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에 기초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포괄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장 중심이 아닌 피보험자 개인관리 체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재해보험법은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관계를 형성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 즉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처음으로 편입된 날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날 당연히 성립된다. 이러한 보험관계의 성립은 사업단위에서 피보험자 단위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산재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합목적성, 곧 결과주의(Finalitätsprinzip)에 기초한다.

## 3. 판례의 견해

- 
- 11) 산재보험에 있어서 결과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별도의 산재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며, 치료 및 재활 과정에 있어서 건강보험 환자와 산재보험의 환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구분될 뿐이다.

피보험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판례의 견해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피보험자 중심체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보험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통해 판례의 입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독일의 사회보험은 제도가 구축되던 당시, 즉 19세기 말경에는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공법적 사회정책적 배려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배려라는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조 중심적 견해(배려이론)와 사회보험은 법적 의미에서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지배적이라는 보험 중심적 견해(보험이론)로 대별되었다. 초창기에는 법적인 생존배려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보험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점차 보험적 접근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로진(Rosin)과 같이 사회보험의 전통적 배려사상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법적인 의미에서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네스(Manes)와 같이 사보험의 기본원리가 사회보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본이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연계성은 부정할 수 없다.<sup>12)</sup>

특히, 연방사회법원의 1957년 판례<sup>13)</sup>는 사회보험의 본질이 사보험의 기본이념과 동일하다는 마네스(Manes)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이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보험의 형태는 사보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의 특수성이 ‘부조와 부양의 분리 또는 구별’에 있으며, 전통적 사회보험의 형태는 물론 새로운 사회급부와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보았다.<sup>14)</sup>

결론적으로 독일의 연방사회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비추어,

<sup>12)</sup> Rosin, Das Recht der Arbeiterversicherung, 1893, S. 255 ff.; Manes, Grundzüge des Versicherungswesens, 1932, S. 3 ff.; 오상호,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2011, 257-258쪽 참조.

<sup>13)</sup> 가족보상금고(Familienausgleichskasse)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연방 입법권한에 근거한 아동수당법(Kindergeldgesetz)의 형식적 및 실질적 헌법합치에 관한 판결(BSG, 20.12.1957 - 7 RKg 4/56), BSGE 6, 213(227).

<sup>14)</sup> 오상호, 앞의 논문, 259-260쪽 참조.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상에 기초하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보험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본질이 부조적 성격보다 보험의 본성에 가깝다는 관점에서 재해보험 역시 보험의 본질에 기초한 사회보험적 성격과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 IV. 독일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중심 체제 강화

##### 1. 피보험자 범위의 점진적 확대

###### (1) 일반적 피보험자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기본적으로 사회법전(SGB)을 근거로 하며,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험의 총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법전 제4권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법전 제4권 제2조 제2항은 “모든 사회보험 분야에서 각 보험 분야별로 특별한 규정의 조건에 따라 임금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람, 보호시설에 취업한 장애인과 농민들이 가입된다.”라고 일반적인 피보험자 범위(Versicherter Personenkreis)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취업자(Beschäftigte)는 취업(Beschäftigung)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독립적인 노동, 특히 근로관계에서의 노무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취업의 근거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활동과 사용자의 노동조직, 즉 사업조직(사업장)에의 편입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취업은 비독립적 노동관계에서 지시에 따른 업무활동과 노동조직에 편입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한다. 따라서 독일 사회보험법상 취업자는 종속적 취업자를 의미하고, 비독립적 노동관계와 사용자 노동조직으로의 편입이 곧 종속적 취업의 표지가 된다. 이는 사회보험법상의 취업관계가 노동관계에서의 비자영적 노동, 즉 사실상 고용관계이고, 취업자는 결국 피

고용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취업관계에서 서면의 노무계약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에 반해, 사회법전 제7권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여기에는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 사용자, 취업자, 취업자와 유사한 자, 자원봉사자 및 명예직 참여자와 같은 공익활동자 및 학생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피보험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은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취업자’의 개념이 노동법상의 종속적 근로관계 보다 넓은 의미의 종속적 취업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재해보험은 이러한 취업관계를 기준으로 진정 재해보험과 부진정 재해보험으로 구분된다.

## (2) 진정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독일 재해보험법은 광범위한 피보험자의 범위를 사회법전 제7권 제2조에서 제6조에 걸쳐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일적 체계가 아닌 집단별 비통일적 체계에 기초하여 포섭하고 있다. 취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진정 재해보험에 있어서 가입유형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당연가입자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자는 구체적으로는 취업자 이외에 취업자와 유사한 자(Wie-Beschäftigte)와 특정 사업주, 직업교육생, 장애인전용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

### 1) 취업자 및 준취업자

독일의 산재보상은 1871년 6월 7일 제국배상책임법(Reichshaftpflichtgesetz) 제정으로 민법에 따른 일반적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철도, 광산, 제련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특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긴 하였으나,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재근로자들의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빈곤이 가중됨에 따라 산재보상의 개선에 대한 입법적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1884년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을 제정함으로써 공장, 광산, 채석장, 조선소 및 건설작업장, 염전 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피보험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재해보험법은 1911년에 제국보험법(RVO) 제3편으로 편입되었으며, 1996년 사회법전 제7권으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항상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보호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적 근로자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업자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9년 12월 20일자 「독립성 지원에 관한 법률<sup>15)</sup>」을 통해 사회법전 제4권 제7조를 개정함으로써 민법상 노무계약(Dienstvertrag, 민법 제611조)에서 규정하는 ‘노무(Dienste)’가 아닌 ‘취업(Beschäftigung)’ 개념을 도입한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 취업은 특히, 노동관계에 있어서 ‘비자영의 노동(nichtselbständige Arbeit)’을 말하며, 취업의 표지는 지시에 따른 행위와 지시자의 노동조직에 편입을 의미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 사실, 이러한 개념은 노동법적 근로자 개념이 명문의 규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상법 제84조 제1항 제2문은 자영인(Selbständige)을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조직하고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6)</sup> 이에 따르면, 자영의 노동은 독립적 노동으로 비독립적 노동, 즉 비자영의 종속적 노동과 구별된다. 다만, 2017

15) 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Selbständigkeit, BGBI I 2000, S. 2.

16) 독일 상법 제84조는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리상(Handelsvertreter)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Gewerbetreibender)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자(기업가)를 위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조직하고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이다.”

년 4월 1일부터 신설된 민법 제611a조(근로계약)가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근로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장에서 인적 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 하에 사용자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재해보험법이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자(Beschäftigte)는 종속적 취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노동관계에서 비자영적 노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법률상 적극적인 명시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적 취업관계의 존재는 사용자와 취업자 사이의 사실상의 취업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취업관계의 전제조건 역시 사용자에 대한 인적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한 인적종속성은 없으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2항에서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취업자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즉 ‘취업자와 유사한 자(Wie-Beschäftigte)’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례는 1) 업무로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업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 2)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실제 의사나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의사에 합치할 것, 3) 업무의 성격상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한 취업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수행될 것, 4) 취업관계를 기초로 한 업무와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 5)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닐 것, 6) 사단의 회원관계, 조합관계 또는 가족관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닐 것을 구체적인 표지로 제시하고 있다.<sup>17)</sup> 물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행위로서 취업자의 노동과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 행위의 경제적 가치는 판례에서 제시한 전제조건들의 선행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sup>18)</sup>

<sup>17)</sup> BSG 20.4.1993 - 2 RU 38/92, HV-INFO 1993, 1556; KassKomm/Lilienfeld, § 2 SGB VII 7, Rn. 123 ff. 참조.

<sup>18)</sup> BSG v. 24.01.1991 - 2 RU 44/90 - SozR 3-2200 § 539 Nr. 8.

사회보험법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취업자 이외에 취업자와 유사한 자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이다. 노동법적 논의에 대응하여 1999년 1월 1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4항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실효성 문제로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 12월 24일 『제2차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국 폐지되었고, 현재와 같이 사회법전 제4권 제2조와 제7조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와 취업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되었다.<sup>19)</sup> 따라서 사회보험법에서 보호하는 ‘취업자와 유사한 자(Wie-Beschäftigte)’는 일반적으로 ‘취업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준취업자’를 의미하며 재해보험의 당연가입자로 인정된다. 비록 법률상 취업자와 유사한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자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특정 사업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비영리분야에서 단기적, 일시적, 일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sup>20)</sup>

## 2) 일부 자영업자

독일 재해보험법은 독립적인 노무제공과 사업조직에의 편입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독립사업자)들도 피보험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제국보험법(RVO) 제539조 제1항 제5호가 그대로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로 보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농업부문 자영업자(자영농), 가내수공업자와 중개인, 연근해 어업종사자, 선박주 및 이들의 (사실상) 배우자 등이다.<sup>21)</sup> 물론,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도 보호대상이 되지만,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심리치료사, 민간요법치료사, 약

19) 유성재,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 2003, 41쪽 이하 참조.

20) BSG 17.3.1992 - 2 RU 22/91, HV-INFO 1992, 1413-1418; *Becker/Franke/Molketin*, S. 121.

21)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5호 ~ 제7호, 제9호 전단.

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영세 자영농민은 신청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5조). 이때, 사회법전 제7권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자영농은 농업 직종조합(BG)에서 관할한다.

독일의 농업 직종조합은 재해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2가지 법률, 즉 「농업 및 임업 사업장 종사자를 위한 재해 및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1886.5.5.)」과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해보험에 관한 법률(1887.7.11.)」로 분리되면서 건축업 직종조합과 별개로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농림원예부문 사회보험(SVLFG)이 연합체로 설립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존의 지역 농업사회보험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농업, 임업, 원예업, 포도재배, 연근해어업, 양식업, 양어장업, 양봉,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공원·화원·공동묘지 관리업자 외에 연방수렵법(BJgdG)에 의한 수렵권 임차인(Jagdpächter)이 포함된다.<sup>22)</sup>

### (3) 부진정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부진정 재해보험은 취업활동이나 노무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피보험자로 보호된다. 특히, 공익이나 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학생(유치원생, 대학생 포함), 자원봉사자 및 명예직 참여자 등의 공익활동자, 간병인, 구직 신청한 실업자 등이 당연가입자로 보호된다(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8호 ~ 제18호).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이나 취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보험에 의한 보호를 제공한다.

#### 1) 유치원생 및 (대)학생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독일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은 「학생 및 유치원생을 위한 재해보험법(이하, 학생재해보험법)<sup>23)</sup>」이

<sup>22)</sup> Schlegel/Voelzke, juris PraxisKommentar SGB VII, 2. Auflage, 2014, S. 42-43.

<sup>23)</sup> 학생재해보험법(Das Gesetz über die Unfallversicherung für Schüler und

발효된 때부터이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법정재해보험(이하, 학생재해보험)은 그 이전인 1967년 연방법원의 판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 의해 학교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 보상이 인정됨에 따라 학생 재해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71년 이후 공법적 재해보험 운영 기관이 학생 재해보험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행사, 소풍, 수학여행, 쉬는 시간이나 통학하는 길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 사회법전 제7권에 따른 학생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된다(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8호 a목 ~ c목). 또한 학생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피보험자인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는 독일의 유치원이나 (대)학교의 운영이 사실상 거의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약속에 기인한다. 이러한 독일 재해보험의 확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발전으로 평가된다.<sup>24)</sup>

## 2) 공익활동자

공익활동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이외에 명예직 참여자로 구별할 수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9호 ~ 제13호). 특히, 독일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즉 자원봉사자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연방자원봉사제도(Bundesfreiwilligendienst, BFD)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독일의 연방자원봉사제도는 사회, 생태, 문화, 스포츠, 사회통합, 긴급구호 및 재난보호 분야에 참여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가적 자원봉사제도의 성격을 갖는다(연방자원봉사법 제1

---

Studenten sowie Kinder in Kindergärten)은 1971년 3월 18일 공포, 같은 해 4월 1일 시행되었다(BGBl. I 1971 S. 237).

24) Deutsches Verbände Forum, Pressemitteilung: 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 e.V., 15.03.2001.

조). 연방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연간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여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사회복무자들을 포괄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사회보험적 보호를 제공하고,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처에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수당 외에 숙식제공이나 근무복 등 현물로 지급된 비용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한다.<sup>25)</sup>

한편, 명예직 활동(Ehrenamtliche Tätigkeit)은 독일의 고유한 공적 자원봉사활동으로서 명예직 참여자 혹은 종사자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비용보상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자유롭고 명예로운 공직활동(Ehrenamt)을 보장한다. 독일은 이러한 명예직 활동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해 2013년 3월 21일 「명예직강화법(Ehrenamtsstärkungsgesetz)<sup>26)</sup>」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통해 단체 및 공익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법 분야의 수많은 규정들과 산재된 명예직 관련 규정들을 조정하였다. 또한 명예직 참여자들에 대한 비용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금전적 비용보상을 비교세 혜택으로 상당부분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명예직 참여자들이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명예직 활동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명예직 참여자들을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호하고 있다.<sup>27)</sup>

자원봉사활동으로 보호되는 영역은 응급구조사업, 공공기관, 공법상의 종교단체, 교육, 복지사업, 농업진흥기관 등이며, 명예직 참여자들이 일반 단체나 협회의 위임 또는 공동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취업자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공익단체의 대표, 재무담당

25) BMFSFJ,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 19.

26) BGBl. I S. 556.

27) 김영미, “독일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국가적 지원 - 연방자원봉사자와 명예직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27호, 2015, 47쪽 참조.

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노사협의회의 명예직 참여자들 역시 피보험자로 보호된다. 다만, 공익활동자들이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관할 직종조합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sup>28)</sup>

그러나 공익활동자라 하더라도 명예직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며, 명예직 활동 이후에 사교적 모임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부담한다.

### 3) 실업자

실업자의 경우, 주로 구직활동을 위해 사업장을 오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재해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관할 지역 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한 실업자에 한하여 피보험자로 인정되며, 연방노동사무소(Bundesagentur für Arbeit, BA)와 직업센터(Jobcenter)의 요구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sup>29)</sup> 따라서 구직 신청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외에 기업이나 병원, 연수기관 등의 민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혹은 노동시장의 적극적 고용조치로서 직업교육 등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피보험자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증명서 발급 때문에 장래의 사용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sup>30)</sup>

이와 같은 구직 신청한 실업자에 대한 재해보험적 보호는 기존의 제국보험법(RVO) 제53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는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14호를 근거로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 제4차 사회법전 제4권 및 타법 개정법률에 의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sup>28)</sup> Initiaive “für mich, für uns, für alle”, sicher engagiert - Versicherungsschutz im Ehenamt, 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Berlin 2007, S. 10.

<sup>29)</sup> Schlegel/Voelzke, S. 76.

<sup>30)</sup> Becker/Franke/Molkentin, S. 103.

#### 4) 재활 및 예방조치 참가자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15호는 제국보험법(RVO) 제539조 제1항 제17a호에서 규정하던 의료·직업재활 및 예방조치 참가자들을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호되는 범위가 한편으로, 법정 질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비용으로 치료 받는 사람이 입원에 의한 의료재활을 받는 경우로 확대되었다. 물론 완전히 입원하는 경우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나 통원치료 방식으로 외래 재활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직업재활급여를 받는 경우, 즉 직업재활조치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교육이나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외에 직업재활조치 수행에 필요한 준비조치로서 상담이나 시험 혹은 조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성이 인정된다.<sup>31)</sup>

그 밖에 예방조치 참가자들도 직업병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활조치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운영기관은 직업병 발생, 재발 또는 악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적절히 동원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탈감작 치료나 알레르기 검사, 직업지원 조치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sup>32)</sup>

#### 5) 비생계형 재가간병인

독일 재해보험에 있어서 간병인의 피보험자성은 초창기에는 제국보험법(RVO) 제539조 제1항 제19호를 근거로 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법전 제7권 제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범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sup>33)</sup> 실질적으로는 1994년 5월 26일 「요양보험법(PflegeVG)」 제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간병인의 피보험자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제2차 요양강화법(PSG II)에 의해서는 법정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에서

31) Becker/Franke/Molkentin, S. 104.

32) Becker/Franke/Molkentin, S. 108.

33) Becker/Franke/Molkentin, S. 113.

도 피보험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에 대한 피보험자성 인정범위는 제한적이다. 즉 피요양인의 주거에서 간병을 하거나 취업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영업의 형태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간병인에 한하여 피보험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요양보험급여는 재가간병, 가족 및 이웃에 의한 간병준비를 촉진하고 우선하여 지원하며 취업이나 자영활동이 아닌 간병활동에 대해서만 법정재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재가간병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요양인을 간병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성이 인정되는 재가간병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생계형 간병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비생계형 재가간병인은 일반적으로 피요양인의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피요양인과의 친족관계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친구나 이웃, 기타 비영리단체에 속한 도우미들도 피보험자로 보호될 수 있다.<sup>34)</sup>

## 2.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 (1) 통합신고 및 징수체계

독일 사회보험은 2010년 사회법전 제7권 제165 제1항 개정을 통해 기존 임금신고 체계를 통합신고체계로 변경하였지만,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적인 시행을 계속 미루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제5차 사회법전 제4권 개정법(5. SGB IV-ÄndG)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임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독일 사회보험의 통합신고체계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의 총칙에 해당하는 사회법전 제4권 제28a조에 따른 사업주의 신고의무(Meldepflicht)에 기초하며,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 업무는 질병금고에서 담당한다(동법

<sup>34)</sup> Schlegel/Voelzke, S. 85-86; Becker/Franke/Molkentin, S. 114.

<sup>35)</sup> Hauck/Noftz, SGB IV, § 28a, 2006, S. 6.

제28d조 이하). 통합사회보험료 법률상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의미하며, 질병보험의 가입된 취업자에 대한 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만, 직권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사회보험료 징수기관(Einzugsstelle)은 질병·요양·연금보험 및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에 대해서만 보험료 금액을 징수한다(동법 제28h조 제2항). 그럼에도 통합신고서는 산재보험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주로 고용관계의 시작과 종료, 파산, 임금, 직업교육의 시작과 종료, 고령자 시간제 근로의 시작과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직원들을 신고해야 하는데(사회법전 제4권 제28a조 제1항, 제2항),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모든 직원들에 대해 2월 16일까지 연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주의 (직종조합) 회원번호, 관할 재해보험 운영기관의 사업장 번호, 보험료 납입 대상인 임금, 위험등급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피보험자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방노동사무의 분류표시에 따른 업무 유형, 고용사업장 번호, 보험료 분류 그룹, 관할 징수기관 및 사용자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임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적, 성명, 주소의 변경, 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인 임금, 임금의 지급기간, 소득능력감소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28a조 제3항).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전자 임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독일재해보험연합(DGUV)에서 설정한 기본데이터와 대조하는 자동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사회법전 제4권 제101조). 이러한 전자 임금신고제도 및 사전 조정의무는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상세한 사항은 독일연금보험연합(DRV Bund), 독일법정재해보험연합(DGUV) 및 법정질병보험 총연합(GKV SV)이 공동원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원칙은 독일재해보험연합(DGUV) 홈페이지에 게시된다.<sup>36)</sup>

## (2)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

독일 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의 산정기초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임금과 피보험자가 노출되는 위험등급이며, 피보험자의 임금은 최대한 연간근로소득액까지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사회법전 제7권 제153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취업자가 아닌 사람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가입된 자영업자나 정관에 의해 가입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연간사업소득(보험총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동법 제154조 제1항).

한편, 독일 재해보험법은 정관을 통해 임금이 아닌 사고위험성을 고려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5조).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소위, ‘인당 보험료(Kopfbeiträge)’라 하며, 피보험자 수가 적은 사업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직종조합(BG)에서 활용된다. 다만, 위험가능성(Gefährdungsrisiko)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위험가능성은 급여지출을 근거로 하며, 피보험자 그룹에 대해 부담수치(Belastungsziffern)로 나타난다.<sup>37)</sup>

$$\text{인당 부담수치} = \text{지급된 급여(유료)} : \text{피보험자 수}^{38)}$$

이러한 부담수치는 최대 6년 동안 적용될 수 있으며(제157조 제5항),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수가 임금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임금을 대신한다.

## 3.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의 개방

최근 나타난 IT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력의 성장은 다시금 4차

36) Becker/Franke/Molkentin, S. 857-858.

37) Becker/Franke/Molkentin, S. 837.

38) Eichenhofer/von Koppelfels-Spies/Wenner, S. 863.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해외 선진 사례로서 독일의 산업관련 정책, 즉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공장을 목표로 한 지능형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며,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생산시설에 IT 기술을 결합하고 네트워크화함으로써 30% 이상의 생산성 증대를 기대한다.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또한 노동세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홈오피스나 모바일오피스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의 절대적 구속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Arbeit) 4.0 또는 일(Work) 4.0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노동재해 4.0 혹은 산재 4.0의 문제가 제기된다.<sup>39)</sup>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유형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비중이 O2O 플랫폼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히 크고,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이나 사업장 편입, 사용자의 지시구속성이라는 인적종속성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법적 측면에서의 보호방안이 우선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독일 재해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의 범위가 법률상 구체화되어 있고, 취업자를 비롯하여 특정 자영업자, 유치원생, (대)학생, 실습생, 직업교육생, 자원봉사자 및 명예직 종사자, 구직 신청한 실업자, 의료·직업재활 및 예방조치 참가자, 일부 재가간병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피보험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베르텔스만 재단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sup>40)</sup> 현실적으로 플랫폼

<sup>39)</sup> Aumann, Arbeitsunfall 4.0, 2019, S. 21.

<sup>40)</sup> Wintermann, Ole ua., Plattformarbeit in Deutschland, Bertelmann Stiftung, 2019, S. 16; 오종은·김영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근로복지연구원, 2019, 55-56쪽.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지 않고,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주당 11시간 활동을 기준으로 약 79%의 월 소득이 1,500유로 이하이며, 주 평균 근로 시간 14시간을 기준으로 단지 7%의 월 소득이 1,500유로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의 비중이 크지 않은 독일의 재해보험 제도의 특성상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는 독립적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로서 임의가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관련 소송<sup>41)</sup>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시대적 요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는 노동재해의 인적 보호범위 개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sup>42)</sup>

## V. 결론

독일 재해보험의 역사는 1884년 처음으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되고, 이후 노동재해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성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이 노동재해에서 직업병과 출퇴근 재해로 확대되는 동시에 피보험자의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성격도 노동자 보험에서 사무직 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 보험으로, 취업자 중심에서 학생, 자원봉사자 및 명예직 종사자를 포괄하는 재해보험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위험한 산업분야의 종속 노동과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보상제도가 노동재해로 인한 실질적 생존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사업장 보험에서 개인보험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사업주 중심의 산재보상제도가 피보험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산재보험의 수혜자 또는 수동적

41) LAG Hessen, 14.02.2019 - 10 Ta 350/18.

42) Aumann, S. 31.

인 적용대상에 불과하던 산재근로자의 지위가 제도의 주체로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독일 재해보험의 중심이 책임에서 보상으로, 사업장에서 개인으로, 다시 사업주에서 피보험자로 이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1942년 히틀러 정권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피보험자 중심의 보험관계를 구축하면서 재해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일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를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연방사회법원이 사회보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면에서 사보험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사회보험의 전통적 배려사상에 비해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재해보험제도가 피보험자를 보험의 주체로 하는 개인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독일 재해보험이 진정 재해보험과 부진정 재해보험으로 대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도 피보험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보험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업주 및 사업장 중심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성에 관한 논의는 체계정합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은 점차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피보험자성을 조기에 인정하고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한 재해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질적 성격에서부터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50년사』, 2014.
- 김영미, “독일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국가적 지원 - 연방자원 봉사와 명예직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27호, 2015.
- 오상호,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2011.
- 오종은·김영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9.
- 유성재,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이강욱·한상용,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The Risk, No. 1 Vol. 5, 2018.
- 홍완식,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05.
- Aumann, Annemarie*, Arbeitsunfall 4.0, Nomos, 2019.
- Becker/Franke/Molkentin* (Hrsg.), Sozialgesetzbuch VII, 5. Auflage, Nomos 2018.
- BMFSFJ,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 Deutsches Verbände Forum, Pressemitteilung: 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 e.V., 15.03.2001.  
<https://verbaende.com/news.php/30-Jahre-gesetzliche-Schueler-Unfallversicherung?m=5331>
- Eichenhofer/von Koppelfels-Spies/Wenner*, SGB VII, Luchterhald Verlag, 2019.
- Hauck/Nofitz*, Sozialgesetzbuch - SGB IV, ESV, 2006.
- Initiative “für mich, für uns, für alle”, sicher engagiert - Versicherungsschutz im Ehenamt, 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Berlin 2007.
- KassKomm/Lilienfeld, § 2 SGB VII 7, Verlag C.H.Beck, 2017.
- Manes, Alfred*, Grundzüge des Versicherungswesens, B.G.Teubner, Leipzig·Berlin 1932.
- Rosin, Heinrich*, Das Recht der Arbeiterversicherung : Die reichsrechtlichen Grundlagen der Arbeitsversicherung, Berlin 1893.

- <http://dlib-pr.mpier.mpg.de/m/kleioc/0010/exec/books/%22195086%22>  
*Schäfer, Dieter*, Soziale Schäden, soziale Kosten und soziale Sicherung,  
Duncker & Humblot, Berlin 1972.
- Schlegel/Voelzke* (Hrsg.), juris PraxisKommentar SGB VII, 2. Auflage, 2014.
- Thomas, Rhidian*,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ume 4, 1 edition*,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6.
- von *Maydell/Ruland/Becker* (Hrsg.), Sozialrechtshandbuch (SRH), 4. Aufl.,  
Nomos 2008.
- Wintermann, Ole u.a.*, Plattformarbeit in Deutschland, Bertelmann Stiftung,  
2019.

<Abstract>

## Insured person and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Focusing on the German system —

Kim, Youngmi\*

It has already been 55 years si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meantime, the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s been quantitatively expanded, and now there are attempts to include platform worker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s practical qualitative extension. This requir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insured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s the insured, namely, the identity of the insu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oncept of the insured and the nature of the insured with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nature that emerge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the origi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insured and its status in terms of general and social insurance. It also explains how the scope of the insured expands along with changes in the nature of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And the system is outlined focusing on the insured. In addition, the review is divided into genuine and non- social accident insur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coverage. It will then look at the insurance premium levy and calculation

---

\* Research Fellow,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centered on the insured. Finally, with the deepening of digitization, it is necessary to open the scope of the insured and include platform workers who need protec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a new approach should be attempted from the intrinsic nature of the system in order to recognize their insured status and develop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soc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future.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sured person, Insured status,  
Social insurance, Platform labor